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3): 연금제도의 모수-연금수급연령

김동겸 선임연구원

- 연금제도의 모수(parameter)란 보험요율, 급여산식, 개시연령 등과 같이 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 이들 변수들은 수급자격, 기여구조, 수급구조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수급자격과 관련된 변수로는 연금개시연령, 기여기간 등이 있으며, 기여구조 측면의 변수로는 연금제도의 대상범위, 보험요율 등이 있으며, 수급구조 관련 변수로는 연금액 산정방법, 최저연령, 연금과세 등이 있음.
- 연금수급연령(pensionable age or pension eligibility ages)이란 개별 경제주체가 조기퇴직 하는 경우 급여액에 대한 감액(actuarial reduction)이 발생하지 않고 최초로 연금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함.¹⁾
 -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상 연금수급연령(normal pension age)”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²⁾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통상 연금수급연령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나이의 범위를 정하기도 함.³⁾
 - 연금수급연령은 은퇴시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음.
 - 일부 학자들은 개별 경제주체의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관대한 연금제도를 지목하고 있으며,⁴⁾ 각국에서는 조기은퇴를 억제하기 위해 조기은퇴에 대한 벌칙부과 또는 은퇴시기 연장에 대한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1)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 일정한 기여요건(contribution requirements)이 충족되는 경우 연금급여가 축소되지 않고도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것이 가능함.

3) OECD(2011)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금수급연령을 20세부터 계속 일한 사람이 주된 연금제도 하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음.

4) Modigliani and Sterling(1983)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은퇴행위에 사회보장제도가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urd(1990)은 62세에서 은퇴패턴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62세가 조기은퇴가 가능한 최초의 연령으로 해당 연령에서 사회보장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나,⁵⁾ 2010년까지 남·녀 모두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되지 않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에 불과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된 반면,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OECD 국가 중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고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되지 않은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함.

〈표 1〉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 비교

국가	남성				여성				국가	남성				여성			
	1949	1971	1989	2010	1949	1971	1989	2010		1949	1971	1989	2010	1949	1971	1989	2010
호주	65	65	65	65	60	60	60	62	한국	-	-	-	60	-	-	-	60
오스트리아	65	65	65	65	65	60	60	60	룩셈부르크	65	65	65	60	65	65	65	60
벨기에	60	60	60	60	55	60	60	60	멕시코	-	65	65	65	-	65	65	65
캐나다	70	68	66	65	70	68	66	65	네덜란드	65	65	65	65	65	65	65	65
체코	-	60	60	61	-	55	57	58.7	뉴질랜드	65	60	60	65	65	60	60	65
덴마크	65	67	67	65	65	62	62	65	노르웨이	70	70	67	67	70	70	67	67
핀란드	-	65	65	65	-	65	65	65	폴란드	60	60	65	65	60	60	60	60
프랑스	-	65	60	60.5	-	65	60	60.5	포르투갈	65	65	65	65	65	65	62	65
독일	63	63	63	65	60	60	60	65	슬로바키아	-	60	60	62	-	55	57	57
그리스	55	57	57	57	55	57	57	57	스페인	65	65	65	65	65	65	65	65
헝가리	60	60	60	60	55	55	55	59	스웨덴	67	67	65	65	67	67	65	65
아이슬란드	-	67	67	67		67	67	67	스위스	-	65	65	65	-	60	62	63
아일랜드	70	70	65	65	70	70	65	65	터키	-	60	45	44.9	-	60	45	41
이탈리아	60	60	55	59	55	55	55	59	영국	65	65	65	65	60	60	60	60
일본	-	60	60	64	-	55	56	62	미국	65	65	65	66	65	65	65	66
OECD 평균	64.3	63.9	62.8	63.0	62.9	62.1	61.1	61.9									

주: 1) 붉은색은 남녀 간 연금수급연령이 다른 것을 의미함.

자료: Turner(2007), Social Security Pensionable Ages in OECD Countries: 1949-2035.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5) 연금개혁(pension reform)은 크게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과 구조적 개혁(fundamental or structural reform)으로 구분할 수 있음. 모수적 개혁은 현재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산식이나 보험요율 등 연금제도의 주요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적 개혁은 연금의 반대상 감소,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증가, 사적연금의 확대, 법정퇴직연령의 변경정책, 고용과 연금의 연계, 가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등을 들 수 있음.